

---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

---

2016. 5.

대한민국 정부

#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4차 국가보고서

1.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이라 함)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지침(E/C.12/2008/2), 유엔총회 결의 62/268 및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E/C.12/KOR/CO/3)를 참고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취한 규약 이행 조치를 기술하였다.
2. 특히 유엔총회 결의 62/268에 따른 분량의 제한에 따라, 규약의 이행조치는 제3차 보고서 심의 후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 권고의 이행에 관한 사안을 주로 제시하였다.
3. 보고서는 관계 부처의 자료를 토대로, 규약위원회 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법무부가 총괄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초안에 대해 2015년 4월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거쳤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초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6월,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초안을 수정, 정부의 최종보고서를 마련하였다.

## 일반 사항

### 규약의 효력

4. 위원회의 **최종견해 제6항**과 관련하여, 헌법은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권리의 속성상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및 학계의 태도이다. 또한 우리 헌법에는 규약 상 권리가 모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37조에서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라 하더라도 경시될 수 없다고 하여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보며 헌법상의 사회보장권도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5. 국내법원이 규약 상 권리를 원용해 내린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대우에 관한 결정’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에서 동 규약 제2조 제2항의 차별금지원칙과 제2조 제1항 및 제4조를 원용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근로자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의 주요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부 예규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법 규정이 동 규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7. 8. 30 2003헌바51결정).

셋째, 이주노동위원회장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 제2조 제1항 및 제23조 제4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및 제26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의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우리 사회에 편입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고 하여 동 규약 등 국제인권 조약을 원용한 판결을 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 9. 15. 2011 구합 5094 판결).

### 국가인권기구

6.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권고 8항과 관련하여 2012. 3. 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이 확대되어, 각급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원장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7. 2009년 당시 인권위 직원 정원 164명은 2014년 현재 191명으로 확대되었고, 인권전문성을 감안하여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9. 및 2015. 1.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 위원에 대한 심사기준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는 한편, 인권위원 임명에 관여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인권위원 선출·지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면서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규칙(2014. 12. 22. 제정)에 따라 위원 중 공석이 발생되기 3개월 전, 공석을 알리고 일반 대중

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임명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인권위가 권고한 법안은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8.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권고('10. 7.), HIV감염인 수용자 관리에 관한 의견표명을 통한 감염인 차별금지('13. 1.), 여군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에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여건개선과 의료서비스 체계 보완, 성희롱 예방, 차별금지 등을 권고하였으며('13. 10.), 비정규직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학교비정규직 처우향상 정책개선권고('13. 3.) 및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정책개선 권고('13. 8.),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 권고('12. 5.), 최저임금준수율 제고 방안 마련에 관한 정책권고('13. 5.) 등 근로조건에 관한 권고, 노령연금 확보와 노인친화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의 건강권 보장 권고('13. 1.),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정책권고('13. 11.), 노숙인 주거권 및 의료권 보장과 일자리 정책 추진 권고('13. 1.)등의 권고를 통해 규약상 권리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9. 위원회는 최종견해 **제36항** 및 **제38항**에서 각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할 것을 독려했다. 정부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개인진정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사회권규약상 규정된 권리에 대한 국내구제절차의 현황과 국내법적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경우는 외국인의 출입국, 사회복지제도, 고용제도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비준을 추진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 정부의 관할 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들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강화해가고 있다.

## 제2조 규약이행을 위한 일반 의무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10. 위원회의 권고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7년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5년간의 1차 계획 이행이 종료된 후 2012~2016년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등에서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안을 검토하여 정책과제에 반영한다.
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행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2012년 이행상황평가 시부터 국민평가단이 보다 객관적이며 직접적인 정책수혜자의 시각에서 이

행상황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든 조약 이행 국가보고서 심의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결과를 국가인권정책 협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유엔 권고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인권정책과 실효성있는 권고 이행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시민사회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인권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개발원조(ODA)

12. **권고 제7항** 이행 관련,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이 된 대한민국은 보다 체계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위한 기본법을 지난 2010년 제정하고, OECD DAC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그 지원규모를 계속 증대해가고 있다. 2014년에는 GNI 대비 0.13%를 지원하였으며, 양자·다자원조의 배분 비율은 75.2:24.8,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율은 36.7:63.3 수준을 기록하였다. 소득그룹별로는 2014년 기준, 총 양자원조의 34.8%가 하위중소득국에 배분되었으며, 최빈국에 38.8%, 상위중소득국에 10%가 지원되었다. 2013년 우리정부의 ODA 규모는 약 2조 411억원이고,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약 2조 2,666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현재에는 GNI 대비 0.7%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 증가추세는 2003년 4,357억원에서 10년 후인 2012년에는 1조 7,986억원으로 약 312.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차별금지

13.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모집·채용 분야는 2009년 3월, 그 외 분야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연령차별적인 모집·채용 관행 개선을 위해 2013년 관련 광고 7,365건에 대해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48건의 위반사례를 발견하여 134건에 대한 경고, 11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였다.
14. 위원회의 **권고 제9항** 관련, 정부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관련된 입법사례 및 적용실태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 중인데, 차별금지 사유 등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어 입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15. 위원회의 **권고 제11항**의 이행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되었다.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제·개정,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는,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 제정 시 근거를 마련하여, 201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업 수 및 예산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대상 사업 수가 2010년 195개에서 2015년 343개로, 그리고 예산규모도 같은 기간 7조 3,144억원에서 26조 626억원으로 18조 7,482억원(정부안 기준) 증가하였고, 이는 2015년 전체 정부 총지출의 6.9%에 해당된다. 이러한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작성 기관의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이에 기반한 성과목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변경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연계 강화, 그리고 작성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및 작성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작성내용을 내실화하였으며, 그간 성인지 예산을 총괄하는 추진 주체가 불명확하여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2012년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해 최초의 지방 성인지 예산인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다. 2015년 제출된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43개 중앙행정기관의 332개 사업, 예산 규모는 27조 7,602억원으로서 2015년 대비 예산규모는 5.8% 증가하였다.

16.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정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해당 기관에 개선 권고를 함으로써 정책개선 효과를 높이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분석평가책임관을 두어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인권교육

17.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교육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희롱(1999년), 성매매(2008년) 예방교육에 이어 성폭력(2013년), 가정폭력(2014년) 예방교육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민간사업장 종사자, 농산어촌 주민 등 일반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강사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에게는 학교에서 성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8. 인권교육은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서 각 소관 사항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원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결성하여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2013년에는 법무부의 국제인권법 연구회와 공동으로 국제인권법과 차별금지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법무부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인권 모의재판”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 난민

19. **권고 제10항** 이행조치로서, 정부는 2012년 2월 난민인정절차의 효과성, 공정성, 신속성을 기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상 난민 등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동법의 집행 및 난민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 내 난민과를 신설하였고,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공무원 및 난민신청이 많은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20. 또한 「난민법」에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보장 등 난민신청자와 그 가족들의 처우를 규정함에 따라, 난민신청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경제적 여건, 부양가족 유무 등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업을 허가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2월부터 초기 난민신청자의 주거와 생계지원을 위한 난민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이들에게 주거와 국적·종교를 고려한 식사 제공, 언어교육, 법제도 등 국내적응교육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건강검진과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

21. **권고 제12항**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힘써왔다. 2014년 1월 현재 결혼이주여성은 24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가족갈등·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인종적·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정착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6년에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갖추었다.
22. 결혼이주여성이 처음 입국할 시에는 2009년 7월부터 영주권·국적취득절차, 가정폭력예방 및 구제기관 등을 안내하고 있고, 기초법률 및 생활지식 등 한국사회 정착

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2010년 10월부터는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국가의 제도·문화, 국제결혼 관련 법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한국인 예비배우자 사전교육, 가족통합 교육, 취업교육을 제공한다.

23. 2011년 4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을 신설,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 후에도 피해회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동년 12월에는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신설하여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및 이혼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허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다.
24. 한편, 결혼이민자의 장기체류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교육 등 초기적응지원에서 취업지원으로 주된 정책 수요가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아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직장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취업훈련정보 제공, 일자리 발굴 및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1,460개의 교육 및 연계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참가자 수는 13,858명이었다. 또한 여가부, 고용노동부 등이 협력하여 결혼이주여성 집중거주 지역 고용센터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결혼이주여성에게 적합한 근무처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 사회권 향유를 위한 국제협력

25. 2009년, 한국은 OECD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원조공여국으로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과학기술분야를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개도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권 신장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6. 2006년 4월 ‘한-UNDP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에 이어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11월 UNDP서울정책센터 설립 및 한-UNDP MDG신탁기금 설치에 합의하였다. 이어 2013년 9월에는 ‘한-UNDP 새마을운동 글로벌 이니셔티브 협력협정’을 체결, 보편적인 개도국



농촌개발 모델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한 공동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UNDP 양성평등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양성평등제고를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여성권리 증진과 양성평등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제3조 양성평등

#### 양성평등조치

27. **권고 13항** 관련,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평등 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 (가) 가족등록제도의 보완

신분정보에 관한 증명서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쉽게 공개되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각 증명서별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를 기본증명서로 하고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기재한 특정증명서제도를 신설하는 등 신청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공개될 수 있도록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4.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2016. 4.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한부모가정, 이혼·입양경력자 등 신분관계의 노출을 꺼리는 이들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그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와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일가정 양립, 남성육아휴직, 유연한 근로스케줄 관련 조치

불합리한 성차별적 인사 관행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3월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적용대상은 계속 확대되었으며, 2013년 5월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어 2013년 12월에는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기준을 확대(동종 업종 평균의 60%→70%미달)하고, 2014년 10월에는 업종별 고용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계획을 제출한 기업들 중 미이행사업주에 대한 명단공표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더불어 승진 및 채용 현황을 분석, 결과적 차별이 발생하는 기업 등에 대한 양성평등컨설팅을 확대하였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기업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일가정 양립, 남성육아휴직 확산 등은 제7조 이하 제46항 내지 제51항에서 기술)

#### (다) 공공보육, 학교급식,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서비스 확장

정부는 결혼,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서비스를 총망라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마음더하기’ 포털 서비스를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보고기간 동안 아동양육 및 보육서비스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3월부터 만0세~5세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2003년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인프라를 대폭 증대하여 영유아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에게 접근성 및 편리성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일자리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라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제6조 노동할 권리

### 여성노동시장참여 증대 및 청년고용촉진(권고 14항)

28. 권고 14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음은 아래 46항 이하에서 설명한다.
29. 정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 2015년 6월 기준 147개소를 운영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직무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15년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확대(3→7개)하고, 전문기술·기업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여성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줄여 육아나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장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30. 또한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체고용률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는 달리 진학과 취업준비 등을 위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며 하락하고 있다. 청년과 기업이 요구하는 학력·자격 격차 등으로 인해 취업난과 구인난이 함께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청년층 고용 문제의 특성이다.
31. 정부는 2014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여,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의 단계별 맞춤형 청년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실업감소 대책

32.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2012년부터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취약계층 목표채용비율을 정해 매년 70%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히 연령, 지역, 장애여부 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와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33. 특히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였고, 2010년부터 취약계층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사업초기에는 1만명 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참여자가 급증하여 2014년에는 약 32만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14년 기준, 동 사업 참여자 중 약 77.9%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2011년부터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서비스를 연계하였다.
34. 또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2013년 개정하였고, 법 시행 이전 60세 정년제 조기도입과 함께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확대하였다. 퇴직한 장년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장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취업이 어려운 장년층에게는 임시직·일용직 중심의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고학력·대기업 등 퇴직 전문인력에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지원하는 한편 중장년 인턴제를 통해 장년층에게 중소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년층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50세 이상 장년 재직자에 대한 근로자 개인훈련지원을 허용하고,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을 기존 90일 이내 이직 예정자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시범사업 실시, 폴리텍 대학의 베이비 부머 특화과정 등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5. 구직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실업자 및 영세사업자에게 1인당 200만원 범위에서 실훈련비를 지원하고, 단기서비스 직종 중심으로는 실업자 계좌제를, 장기 훈련으로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에 7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들은 2014년 기준 75%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36.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고용률은 2012년 64.6%에서 2014년 65.6%로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동 기간 3.2%에서 3.5%로 소폭 증가하였다. 대상별로 보면 동 기간 동안 고용정책의 핵심 대상인 장년층(55~64세)은 2.6%p, 여성이 1.4%p의 고용률 상승을 보였다.

#### 부당해고

3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일방적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동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2007년 이전까지는 구제절차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일원화하고,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구제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직업훈련

38. 정부는 낮은 청년 고용률의 원인 중 하나는 현장과 괴리된 직업교육훈련이라고 보고, 인력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체제로 전환하는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를 2013년 9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는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실무·이론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학습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으며, 이외 근로조건 및 산재적용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39. 또 사업주가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 근로자가 본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기업 자체 또는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소속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연간 4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40. 그러나 중소기업의 근로자 훈련 참여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아 이러한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등 중소기업 특화사업을 도입하였고, 2014년에는 훈련격차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41.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직접 훈련 지원은 근로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사업주로부터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이다. 또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를 대부하는 사업을 2013년까지 추진하였고, 2014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부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장기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으로 인해 단기훈련에 치중할 경우에 장기적이며 양질의 훈련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및 전직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대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2. 향후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이직·전직 지원이 필요한 중장년층에 대한 훈련,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청년층 근로자 지원훈련, 고숙련 훈련 등을 우대 지원하면서, 재

직자 직업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특히 그 훈련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개편하여, 직업훈련과 직무의 연관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 제7조 근로조건

### 최저임금(권고 16항)

43. 최저임금 결정절차는 3차 보고서 제121항을 참고바람. 최저임금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그 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부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므로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히 권고 제16항에 언급된 2009년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는 의원발의 법안은 폐기되었다.
44.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시 필수점검항목이며, 특히 위반사례가 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 교사, 기업노무담당자, 공인노무사 등 민간퇴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청소년근로조건지킴이’를 구성하고, 또래 청소년을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로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업종별 협회·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간담회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 단체 등에 알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모바일 웹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운영 등 다양한 신고체계도 마련하였다.
45. 한편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법처리 절차가 상당한 기일동안 진행되고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 수준도 낮아 현장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최저임금법 위반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여 사업주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근로조건 및 일·가정양립(권고 13항)

46. 한국의 고용상 남녀격차는 출산·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어 여성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경력단절을 겪어 질 낮은 일자리에 근무하게 되는

데 주요 원인이 있다.

47. 지난 보고서에 제출한 바와 같이 2007년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확대하고, 2014년 2월 범정부 차원의 여성의 경력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48.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1년간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2010년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3세 이하에서 만 6세 이하로, 2014년에는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여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11년에는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40%(월 50~100만원)로 상향하였다. 또한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고용유지비용 지원금을 상향하여, 대기업은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중소기업은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49.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008년 도입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2011년 시작하였다.
50. 또한 직장의 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형, 산업단지형 어린이집에 대해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51. 이러한 정책의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9년 53.9%에서 2015년 57.9%로, 여성고용률은 52.2%에서 55.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2014년 10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 1개월분을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하였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및 비정규직 대책(권고 15항)

52. 남녀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여성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남녀의 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으로 37%로서 그 격차가 점차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53. 위원회의 권고 제15항과 관련, 정부는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54.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피해 근로자가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차별시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적고 인용률도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2년 8월부터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하여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후 절차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건 처리 절차에 준한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외에도 해당 사업 내 동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유무를 확대·조사하여 차별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차별이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 등의 제도개선명령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정규직(주로 기간제)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2년에는 108건, 2013년에는 131건, 2014년에는 60건의 차별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지도를 하였다.
55. 2011년 9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업의 인력 운용의 유연성은 보장하되, 비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8개 법률 개정안이 2012년 2월 공포되었다.
56. 또한 2012년부터는 퀵서비스기사·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으며,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1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2011년 11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다수 활용 사업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12년 2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125만원 미만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57. 이러한 차별시정제도와 지속적 지도·감독의 결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과 성·연령·학력·근속년수·직종 등 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은 최근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다.
58.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자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과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하고, 기간제·파견·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2015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 공모사업)를 1년간 지원하게 된다.

59. 한편 법원은 2년간 근로계약 종결 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사건에 있어 기간을 정하는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판결),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에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작업장 내 성희롱(권고 17항)

60. 직장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것은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여타 범죄행위의 유형과 처벌 등에 견주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으로 성희롱 금지 및 사업주의 예방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고 근로감독관을 통한 진정사건 처리 및 여성고용환경개선 지도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화하였으며 2012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신고 대표전화를 개설하였고, 모바일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61.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며, 성희롱사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게는 특별인권교육, 행위자 소속기관에게는 징계 및 인사조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행위자 소속기관 또는 유관부처에게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권고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권위의 성희롱 구제권고가 불수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언론에 공표하거나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희롱 진정사건 사례집(2007, 2009, 2010, 2011)과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2012)를 발간, 배포하여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과 요건을 정립하고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산업환경

62.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 권고 제18항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을 증원하였다. 2009년 이후 꾸준한 증원 결과 2014년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22% 증가, 산업재해율은 24% 감소하였다.



6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고취를 위해 지역특성화교육, 사내안전보건교육, 이동안전보건교육,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지난 5년간 4,300,317명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2011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4년 말까지 총 1,449,364명의 건설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론위주에서 실습과 사례 중심 교육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50인 미만 서비스업종 중 재해다발 6대 업종에 대해 교육실시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 3억 미만 건설현장, 서비스업 중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지도사업을 통해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64. 산업 분야별로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2011년에 근로자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사업장특성에 맞게 작성·이행토록 하고 고용부는 이들의 이행수준을 확인·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원청업체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재해 위험성이 높은 위험기계·기구를 제도단계와 사용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제도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를 도모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고위험·중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관 전담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대상사업장은 화학물질 다수 취급 사업장, 건설현장, 크레인 등 사망사고 유발위험 사업장, 기계 설비 다수 보유 사업장 등 1만개소이다. 전담관리사업장에 대한 재해현황 분석결과, 사고성 재해가 2014년 한해 약 13.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5. 외국인근로자는 소규모업체에 주로 취업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12년 산업안전공단은 “외국인근로자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취업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안전보건 자료 보급,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고용허가제 및 시행기관과 연계가 미비하여 사업 효과성이 저하되고, 안전보건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고용허가제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연계·통합하고 각 제도 운영기관을 연계하는 정부차원의 산재예방대책을 2014년 5월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기술지원대상 선정 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우선 지원기준에 반영하여 기술 및 재정지원 사업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습형 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운영의 현장성을 강화하였고, 안전보건 미디어자료 50여종을 13개국 언어로 개발하여 외국인 고용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센터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66. 또한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강제근로금지, 중간착취의 배

제, 금품청산 등의 근로자 권리구제 조항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들도 이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고 있다.

### 제8조 노동3권

67. 근로자의 근로3권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으며,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 및 노사교섭 등에 대해서는 3차 보고서 제149항-160항에 설명한 바와 같다.
68. 위원회의 최종견해 **제19항 및 제20항의 권고**와 관련, 2010년 1월 1일부터 교원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교원노조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위원회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등을 비준할 것을 고려하라는 권고를 하였는데, 여전히 공무원 노조가입범위·실직자 노조가입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도가 ILO협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와 ILO의 이견이 존재하므로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다.

#### 노조결성권 및 노사교섭

69.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조설립이 허용되었으며, 사업장 내에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였다. 교섭창구단일화는 1차적으로 자율적 단일화를 시도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공동교섭 대표단을 결성한다. 교섭대표 노조 및 사용자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여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동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12. 4. 24. 결정 2011헌마338).
70. 노조설립 및 운영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및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부당노동행위 사이버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1월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중대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시정지시를 생략하고 즉시 수사를 개시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조치기준을 개정하였다.

#### 쟁의행위보장

71. 권고 제20항 관련, 2008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사전적으로 금지하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어 원칙적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파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자율교섭을 통해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최소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교섭 결렬 시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72.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개인에 대한 압류는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7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쟁의행위가 목적, 절차, 방법에 있어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 고용허가제 제고 및 이주노동자 노조결성권

74. 권고 제21항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2009년 12월부터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기까지의 기간이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고, 임신·출산·질병 등 사유로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 연장해주고 있다. 2012년 7월부터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기산되지 않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처우 등을 이와 같은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하였다.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다. 한편, 2015. 6. 25. 대법원은 정부가 불법 체류외국인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사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불법체류 외국인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 2015년 8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아들였다.

## 제9조 사회보장

75.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는 3차 국가보고서 제176항 내지 제219항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76. 권고 제22항의 부양의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검토와 관련하여,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인식과 현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수급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였고, 이 정책은 2013년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2013년에는 부양의무자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 기본재산액을 대도시는 약 1.7배, 중소도시는 약 1.25배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중 주거를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약 4배 완화하였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개별 지원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4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였다. 개편된 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소득기준이 4인가구 기준 297만원에서 485만원으로 대폭 완화되어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일 선정기준이 급여별 계단식으로 변경되어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77. 권고 제22항 관련, 노숙인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없어 일반 수급자와 같은 기준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도 실제 거주 사실을 해당 지역 보장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다른 수급자와 같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대신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

#### 의료급여

78.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제3차보고서 제 197항~198항을 참조할 것. 2010년에는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대

한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인정대상 질환을 확대하였으며, 2012년에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상향 조정,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노숙인에 대한 의료급여 제공을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급여를 실시하였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혜택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일원화하여 의료급여1종 자격을 부여하고 본인부담을 면제하였다.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고가 항암제 등 급여 확대), 비급여 부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선택진료 비용 축소·4·5인실 상급병실 급여화) 및 선별급여를 도입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인정질환을 확대하였다. 또한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급여를 적용하였고 2015년 70세, 2016년 65세까지 대상연령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노인틀니의 급여대상 연령도 동일하게 확대 예정). 기초생활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2015년 7월부터 13만7천명이 국민기초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되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79.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써 「긴급복지지원법」을 2005년 제정, 2006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일정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가정폭력 등을 위기상황으로 보아 우선 생계·주거·의료지원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지원 후 사후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사회보험지원

80.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비용부담, 소득노출, 복지혜택축소 우려 등으로 사회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실업에 대한 대비나 노후준비가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사회안전망 속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가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시범사업 도입 후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약 140만 명의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고용보험 확대

81.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이들 상당수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며, 자영업자의 폐업 시 안정적으로 재취업·재창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2012년 1월부터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및 전직 지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2013년 말 현재 30,649명이 가입하였고, 이 중 17,908명이 가입유지 중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82.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산재보험은 2013년 말 현재 적용사업장수 1,977,057개소, 근로자 15,449,228명이 적용을 받고 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증가하는 등 종사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재해발생위험성이 높은 택배·퀵서비스 사업의 경우 종사자 규모가 급증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2012년 5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83. 또,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진폐장해인에게는 2010년 11월부터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2013년 7월에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직업성 암 발암물질 14종 등 신규 유해요인 35종, 직업성 암 12종 및 신규질병 3종을 추가하였다. 정부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요양, 보상 중심에서 재활복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2011년 2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완료하고, 2012-2014년 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진행 중이다.

### 국민연금

84.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었고 2014년 현재 21,125천명이 가입하고 있고, 가입자소득 9% 납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의 4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가입자 중 농어민과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4년 말 기준 47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50%였으나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하, 2014년 현재에는 47%이다.
85. 국민연금은 2012년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였고, 2014년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나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된 전업주부 등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격상실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5년 내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져 2016년부터 전업주부 등 463만 명이 추가로 노후에 국민연금 급여혜택을 받기

쉬워진다.

86.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분할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관련법을 개정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 장애인 소득보장

87.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체계로는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보장정책인 국민연금제도와 공공부조 성격에 가까운 정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이 있다. 장애수당은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199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0년 7월 장애인연금 도입 이전까지는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수당과 경증장애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장애인연금 도입 이후 중증장애인에게는 종전 중증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에게는 경증장애수당 대신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장애수당 지급 대상은 만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증장애인(3~6급)이다. 2014년 장애수당 월 급여액은 2~3만원('14)으로서 경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실제추가비용인 월 13만원(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대비 미흡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년에는 장애수당을 1만원 인상하여 매월 2~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증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급여 인상을 추진 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을 위해 '13년에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2만원 인상(0~6만원 → 2~8만원)하였고, '14.7월부터는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대상을 확대(소득하위 63% → 70%)하고 기초급여를 전년대비 2배수준 인상(96,800원 → 200,000원)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실제 추가비용은 월 23만원(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이며, '15년 6월 현재 월 4만원~28.3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88. 2011년 9월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체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10월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난민인정자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에게도 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2013년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3,000명에 이른다.

## 제10조 가족에 대한 보호

### 보육지원

89. 2013년부터 5세 이하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내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보육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양질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확대하였고, 특히 영유아 지원 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그간 양적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정부 보육정책이 추진되었으나 향후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맞춤형 보육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에 힘쓸 계획이다.

###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90.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소득지원으로는 장애인연금지급,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 주거지원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의료지원으로는 국립재활원 확대개원, 의료비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가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으로는 교통요금 감면 및 무료승차, 전화요금 감면, 차량 등록세 등 면제, 대학입학 특례 등이 있다.

### 모성 보호

91. 임신·출산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가 90일 보장되며,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다. 무급 30일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월 135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모든 남녀근로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2014년 7월부터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 적용하였다.



### 아동 보호 및 지원

92. 연소자의 근로는 헌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고 있음은 제3차 보고서 제248항 내지 제250항과 같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연소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노인에 대한 보편적 최소연금 등 정책

93. **권고 제23항** 관련,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된 후 같은 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에게 매월 월 8.4만원의 연금을 지급하였다. 연금액은 대상자의 재산, 근로 및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뒤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 수급대상자를 결정하였다. 이후 노인에게 보편적인 최소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5월 제정·7월부터 시행한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이 금액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산정된다. 무연금자는 월 20만원,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월연금액에 따라 10만원~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금액은 물가상승분과 연동된다.

### 이민자의 가족결합

94.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족재결합을 위한 체류자격은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자격이 있는데, 거주자격은 국민의 미성년 자녀 또는 영주(F-5)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고, 동반자격은 특정한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자격은 거주 및 동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3년 또는 4년10개월(재고용 시)의 취업활동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자국으로 귀국하도록 함으로써 정주화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초청에 의한 가족동거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가족이 관광 및 단기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외국인과 같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95.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자녀양육 지원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2011년 7월부터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2011년 3월부터 국민의 미성년 외국

인 자녀에 대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2년 체류 후에는 영주 자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적 변경이 없이도 국내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도 가족재결합은 보장되고 있다.

### 성폭력

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은 수차례 개정되었다.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였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감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인터넷 등록·공개를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까지 확대·시행하였다.
97. 2011년 11월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어 2013년 6월에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유사강간죄 신설,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범위 확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규정 적용 배제 범위 확대, 법정형 상향, 신상공개범위 확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 적용 범위 확대, 아동 및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98. 2012년 3월에 도입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따라, 피해자들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조력을 받게 되었다. 이어 2013년에는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로 전면 확대되었고, 2013년 7월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정폭력

99. **권고 제24항** 관련, 정부는 2013년 6월 8개 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주요 내용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초기 대응 및 처벌강화, 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를 통해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10.4%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을 기존 각급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로 확대하였고, 가정폭력사건

신고 시 경찰출동 의무화, 경찰관의 현장출입, 조사 거부 및 긴급입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2년 8,762건 → 2013년 16,785건 → 2014년 17,557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2년 32.8% → 2013년 11.8% → 2014년 11.1%로 감소하고 있다.

100.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 9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에서는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01.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족보호시설을 늘리는 한편,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 일상 의료비·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특히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이주여성보호시설을 27개소로 확대하였다. 2014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율은 77.6%이며,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율은 104.3%이었다. 또한 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을 확대하여, 2014년 기준 총 203호의 임대주택에 239가구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아울러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해, 주거를 제공하는 그룹홈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건수는 2014년 12,023건으로 2013년 11,451건 보다 5% 증가하였다.
102. 2013년부터 전국 17개 경찰교육센터에 ‘가정폭력대응 실무과정’을 개설하는 등 현장출동 경찰관 대상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교육원에는 ‘가정폭력 강사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2014년에는 이를 ‘가정폭력 대응 전문과정’으로 확대·개편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특히 사건처리 절차와 과정에 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으로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협조하여 지역상당소와 사례 공유 등 전문적이며 현실적 사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처리절차에 관한 ‘가정폭력사건처리 절차도’, ‘가정폭력현장대응매뉴얼’을 제작·배부하는 등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검찰 및 검찰수사관에 대해서는 수사전문가 양성을 위해 ‘여성아동수사전문가’, ‘여성아동학대범죄수사실무’, ‘보호관찰사범별 지도감독’ 등 전문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103.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2013년부터 경찰의 112 범죄신고센터에서 가정폭력 코드를 추가·관리하고 있고, 신고활성화 홍보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사건은 2013년 160,272건, 2014년 227,60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인신매매

104. 권고 제25항 인신매매 근절과 관련, 「형법」을 개정, 인신매매죄를 신설하고 기존의 약취·유인죄를 개정하는 등 「UN 초국가범죄협약 부속 인신매매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를 완료하였다. 즉, 보편적 관할권 규정(형법 제296조의2)을 신설하고, 노동력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상기 의정서 가입에 대한 비준 동의서를 2014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5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105. 인신매매죄 신설 등을 포함하는 「형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 법무연수원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성폭력, 성매매 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수강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여 2013년 한해 검사, 수사관 등 총 488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10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014년 개정하여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에 재유입되지 않고 직업훈련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자들을 위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신설하였고,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면서 숙식, 상담, 의료, 법률,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간 입소가 가능하나, 수사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입소기간의 연장과 자활지원센터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E-6비자 발급 모니터링 강화

107.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예술홍행비자(E-6)입국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2014년 3월부터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정부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2007년 5월부터 외국인 여성이 업주로부터 성매매 강요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경우 권리 구제 시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4년 5월부터는 예술홍행비자로 입국하는 연예인에 대해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초 생활정보, 출입국관련법령 정보, 권리침해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등을 교육하는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08.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 2013년 개도국 내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ODA사업을 추진 중이며 캄보디아 정부, 현지 민간단체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맹률이 높고 국경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이주와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기본교육과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국제공조를 위해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 대응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초국가적 조직범죄 척결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 학교 성교육 및 미혼모 지원

109. 위원회의 권고 제31항 관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발달 특성에 맞는 학교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이 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 개발,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성에 대한 가치관이 학교교육과정 전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1년 이후 학교성교육의 내용에 청소년기의 미혼모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성과 생식, 피임법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0. 양육, 생계유지,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중 13%만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족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 중·고생에게는 연 5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급여를 신설, 추가 지원하였고, 아동양육비의 경우 2013년에는 월 7만원, 2015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거주형 임대주택 지원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위하여 비양육부로부터 양육비를 이행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관한 법률”을 제정(2014.3.24.)하였고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다.
111. 또한 미혼모 발생의 다수를 차지하는 24세 미만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펼치면서, 2010년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을 실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철폐하기 위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고교 학비, 자립지원수당 등의 급여 지원, 심리·정서상담, 출산 및 양육용품 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통한 보호 등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에는 미혼모가 노출을 꺼려 수혜대상 범위가 협소하였으나, 홈페이지운영,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인식개선 홍보노력을 계속하여 사업초기 대비 수혜대상은

약 71.5% 가까이 증가하였다.

## 제11조 생활조건 개선

### 빈곤대책

112. **권고 제26항**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정책적인 빈곤선인 동시에 공공부조의 기준액으로 활용되었다. 산정 방식은 전물량 방식으로,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생계비에는 경제적 발전에 따른 상대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가의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나열하였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이 적용되고, 구성원의 소득 수준에 맞춰 기준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다.
113.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있어 소극적 보호 중심에서 적극적 탈빈곤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장애인연금 도입(2010년), 잠재빈곤층 발굴 및 지원(2011년), 기초연금(2014년)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빈곤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와 연계한 복지에 방점을 두어, 매칭펀드(2011년), 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지급(2014년) 등 저소득층의 탈빈곤 및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빈곤계층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제4차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제3차 실태조사(2010년)에 따르면 빈곤층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2014년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33만명), 차상위계층 185만명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가 전체 빈곤층의 약 78.4~80% 이상을 차지하며,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았다. 수급자 가구의 22.8%는 아동이 있고, 차상위계층 가구는 아동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90% 내외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47.6%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며, 차상위계층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다. 2014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수급자가 전체의 56%로 남성 수급자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중년기(40~64세)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노년기(65세 이상) 29.9%, 청소년기(12~19세) 15.3% 순으로 나타났다.

### 노숙자 문제 해결

114. 권고 제27항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2년 6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복지시설로 구분되었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입소자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숙인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개편하였고, 노숙인 등의 다양한 욕구별로 필요한 주거, 고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노숙인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전문시설에 입소하여 자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5. 복지시설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에 대해 임시주거비를 보조하여 지역사회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 등이 포함된 현장대응팀(Assertive Community Treatment)이 만성 중증의 알코올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에 대한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도록 병원입원, 시설 연계, 임시주거비 지원 등을 통하여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태의 노숙인이 거리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116. 노숙자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라 노숙 위기집단에 대한 예방지원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고용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재정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민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향후 주거 취약 계층인 노숙인에게 독립 주거를 제공하여 탈노숙 및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노숙인의 실질적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 식량권

117. 2007년부터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11년에는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국민의 식생활, 질병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식생활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국민의 체위 및 식사 섭취 수준을 고려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안과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마련 중이다.
118.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취약인구에 대해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특정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8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5년 기준, 전국 253개 보건소에서 시행 중이다.

### 식수권

119. 먹는 물 오염사고 조기확인 후 취수원 보호, 오염물질 확산방지 등 대응을 위한 오염경보시스템을 전국 70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도시와 농촌의 상수도 보급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거권

120. 한국의 주택보급률 현황 등은 제3차 보고서 제288항 내지 291항을 참고하라. 2014년에 주택보급률은 103.5%를 달성하였고, 1인당 주거면적도 2006년 26.2㎡에서 2014년 33.5㎡로 증가하였고, 주거기반이 양호한 아파트 비중이 2010년 58.4%이고 과거 5년간('06~'10) 주택건설물량 중 약 79.8%가 아파트 형태로 건설되고 있어 아파트 비중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121. 정부는 공공주거 확대 정책을 지속추진하면서, 인구·가구구조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도시공간 이용 방식 변화 등 주택 정책의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꾀하고 있다.
122. 정부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급 수단을 다양화하고, 도시외곽보다는 도심내 공급을 활성화하며, 이후로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여유자금이 서민용 임대주택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혜택을 확대하고 있고, 주거급여제도를 확대·강화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지원을 실질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은 개편 후 지급대상이 2013년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 평균 금액은 2013년 약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될 계획이며, '15년에는 13만 가구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4년 현재 소득 1~5분위 무주택가구(520만 가구) 중 60.2%(313만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2022년까지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23. 최종건해 제28항에서 위원회는 정부내 전담창구 설립 권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5년 주거복지본부 내 주거복지지원팀을 신설하였고, 2014년에는 주거급여 업무를 복지부에서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주거복지기획과 내에 주거급여팀을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기획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도심내 최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사업을 실시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수준이 갑자기 열악해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사업,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이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시원·여인숙 거주자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 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부터 주거불안정 저소득층에게 기존 주거급여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조사를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주거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거와 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복지정책적 수단을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124. 최종건해 제28항 권고의 이행 관련,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 6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이전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 후 주거지원계획을 추진하였고, 2011년 7월에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을 마련,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비주택가구 현황을 조사하여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이들을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우선 수혜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알선을 지원하며, 주거지원 대상자 특성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25. 주거가 취약한 청년층, 특히 학업 때문에 비연고지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기숙사 부족 등으로 인해 인근 원룸형 주택을 고가로 임차하여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2011년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고, 2012년부터는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확충하는 경우 사업비의 90%까지 저리의 공공기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는 출산율을 높이고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혼인한 지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26. 장애인, 노인 등 주거 약자의 경우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아 이들을 위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였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2년 제정하여 보다 제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한편 사회취약 아동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였는데, 지원대상은 소년소녀 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의 아동·청소년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및 무주택자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포털을 통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의 지원요건 등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강제퇴거

127. 위원회의 권고 제29항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

른 정비사업에서의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민의 이주가 완료되면 진행되며, 철거 단계에서는 보상 등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 정부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동의요건을 규정하였고, 철거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철거시기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개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각각 과반수 및 3/4이상의 주민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일출 전과 일몰 후, 호우나 대설·태풍·한파 등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된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에는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28. 또한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그 밖의 보상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철거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설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29.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점유를 탈취하는 제도로써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므로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작위의무에 해당하거나 작위의무라 하더라도 대체성이 없는 인도나 퇴거의무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지구 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퇴거요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야만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 제12조 건강권

### 의료보험

130. 권고 제30항 관련,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기준 62%이며,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도 54.5%(2011년)로 다소 낮은 수준이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급여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 예방프로그램

131. 2010년 수립된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 등 건강생활실천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및 건강환경 조성의 4대 분야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132.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2015년도부터 담배가격을 인상하고,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금연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감시대상 감염병의 국가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2009년 광명시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19개 시군구)에서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흡연·음주 등 건강위해요인을 억제하고 건강증진사업 등 예방적 보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아동 및 모성보건

133.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제3차 국가보고서 제323항 내지 제327항을 참고바람. 2011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임신부에 대해서는 주산기 관리 강화로 모성 및 태아의 건강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영유아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모든 임신 여성에게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하여 산전관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모성사망비는 전년 대비 42.2% 감소하였다.
134. 임신부의 조산·유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고, 빈혈 등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영유아·수유부에게 전문가 처방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식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모든 출생아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2006년부터 6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부터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난청 조기진단사업을 실시하였다.

## **제13조 교육권 및 제14조 무상초등교육**

### 교육의 목적 및 무상초등교육

135.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은 최초보고서 제502항-503항에 상술되어 있으며, 초등교육

무상의무화는 최초보고서 제449항-제451항에서 설명하였듯이 완전히 실현되었다.

136. 규약 제13조 제1항의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2012년 7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여 총론 및 9개 교과교육과정에 ‘인격존중, 관용의 정신 배양, 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높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공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재정지원(권고33항)

137. 사교육 경감을 위해 학교교육에서 인성·실습·체험교육을 강화, 수준별 이동수업 및 성취평가제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등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형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료 뿐만 아니라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2014년 한해 총 9,259억원을 지원하였다.

#### 경쟁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대책

138. 권고 제34항 관련, 교육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이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2시 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 없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하고 있다. 국가단위의 평가는 학생 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중3학년, 고2학년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4단계 수준으로 성적결과표가 배부되며 점수, 등수 등이 표기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보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139. 또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하여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공/사립 대안학교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안교육 담당자 연수, 교육콘텐츠 개발, 운영컨설팅, 전문가 포럼 등을 지원하여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 기술 및 직업교육 중등과정

140. 고교 직업교육은 학력이나 학벌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기능역량강화, 취업지도 강화 등 2008년부터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고교 직업교육 정책을 추진해오

고 있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졸업 후 선취업 및 기술명장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마이스터고를 2010년부터 육성하고 있으며, 성장동력산업 분야 및 구조적 인력부족 분야에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가 해당 분야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히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 고등교육: 대학등록금 경감대책

141.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2년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합·확대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였다.
142. 2012년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도입 이후, 정부재원장학금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2014년도 국가장학금 수혜인원은 122만 2천명에 이른다. 2015년에는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원 장학금 3조 9천억과 대학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확충) 3조 1천억원으로 ‘11년 총 등록금 14조원 대비 7조원을 마련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리는 2.7%로 5년 평균물가상승율인 3.22% 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였다.

#### 평생교육

143. 평생교육에 관해서는 제2차 보고서 제351항-361항, 제3차 보고서 제387항-390항을 참조바람.
144. 한국은 만 18세 이상 성인비문해율이 1.7%에 불과하지만, 기초문해력이 부족한 저학력 성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학령기에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들은 전쟁, 가난 등 이유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50대 이상 성인이 대부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많다.

#### 소수자 및 소수아동교육

145. 다문화가정 학생(국제결혼 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을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고,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활용하여 대학생이 멘토로서 기초학습등 학력 증진을 돕는 정책, 수학·과학, 언어, 리더십, 예체능 분야의 우수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또한 도입하였다.

146. 부모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함에 따른 중도입국학생, 외국인학생 등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학급을 중심으로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반편견·반차별교육, 타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중점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부적응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지원한다.
147. 국제결혼 가정 등의 자녀 역량 개발 및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200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언어영재교실 사업을 추진, 2011년 전국단위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일정 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를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하고, 국제결혼가정 등의 자녀(만3세~초등학교 재학생)를 주요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와 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중언어 능력의 효과적 향상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소통하는 환경의 형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 사업을 2014년 하반기부터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범사업을 거쳐(6개 센터)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장애교육

1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07. 5. 25.)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5년 4월 현재 88,067명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의 장애영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신지체, 자폐성장애, 발달지체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이나 교원 수도 증가하였는데, 2015년 4월 현재 특수학교 167개교, 특수학급 9,868개 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19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교원은 18,339명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2015년에는 121개 대학에 807명의 장애학생이 입학하였으며, 대학 및 대학원의 장애학생을 위해 221교에 도우미 2,750명을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4월 현재 468개 대학에 8,598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다. 향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특수학교(급) 신·증설, 특수교육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증원 등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 교육에서 남녀평등

149. 한국은 교육기회에 있어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교육에서 대학진학률 까지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대학진학률은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다.

## 제15조 문화적 생활에 관한 권리

### 문화소외계층·지역 지원

150.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2000년부터 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2011년 「방송법」을 개정하여, 중앙/지역 지상파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방송사 등이 자막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 5%를 제공하도록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등장하고, 미디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이 약화될 우려를 낳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
151. 사회양극화로 인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문화바우처 사업은 계속 수혜자가 확대되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장애인과 노인 등 여건에 따른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152.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주요 스포츠 지원 사업으로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과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이 있다. 1997년부터 노인, 아동시설 등에 운동용품과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보육원 등 소외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유·청소년(만5~19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매월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관람이용권 등 다양한 체육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문화다양성

153. 한국은 2010년 3월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 가입을 위한 비준서를 기탁하여 7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2014년 현재 최초 보고를 준비하면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154. 문화다양성정책은 소수 문화의 표출기회를 보장하고 소수 그룹의 문화생활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창조력 및 포용력을 향상시키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에 대비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다리 사업은 이러한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서, 이주민,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문화적 표출기회를 제공하고, 주류문화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서나 영상 등 문화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55. 한편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민자가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국에 정착한 이민자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2009년 발족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민원안내와 고충상담 등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외국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2011년부터 ‘이민정책 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12년부터는 외국인지원단체 종사자, 학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강좌를 개설하였다.
156. 또한 다양화된 미디어 환경도 문화다양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특히 2005년 인터넷 신문이 법제화되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국민의 미디어 이용시간 역시 증가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문화생활 향유 환경이 마련되었다. 2012년에는 인터넷신문의 시장의 외형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정식 출범하여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각 신문사 및 방송사는 신춘문예모집, 음악회개최, 미술전시 등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생활 참여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 예술인 복지정책

157. 2012년 생활고로 인한 예술인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1월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들은 법률·심리 상담·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은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 지급, 직업교육지원, 의료비 지원, 산재 보험료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14년 3월 동법을 개정, 출연료나 원고료 미지급,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 문화예술학교 및 전문교육

158. 정부는 어려서부터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을 통한 창의성과 인성, 소통과 공감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학교에 국악, 연극 등 8개 예술분야 4,735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학생은 약 250만명에 이른다. 특히 문화소외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지역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하여 전교생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을 전국 43개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463개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관과 교정시설 재소자, 학교 밖 청소년, 군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또 전국 80여개의 지방문화예술회관과 700여개 문화기반 시설에서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점차 지역 중심의 풀뿌리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
159. **권고 제35항** 관련,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창의적 예술가 양성을 위한 자율적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교원을 채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율적 커리큘럼으로서 학제간 교육을 위한 예술교양학부를 2011년 설립하였고, 전공간 교육 협동과정을 운영하며, 타 대학교와 공동 교양학부 운영협약 체결 등 노력을 전개하였고, 교수 채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국제문화교류

160. 최초보고서 제583-588항, 제2차 보고서 제450-456항 및 제3차 보고서 제463-465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상호호혜의 이념 하에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지원을 위한 문화협정은 2014년 현재 101개국과 체결하였으며, 그 중 38개국과 문화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과학기술

16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2012년 전면 개정, 2013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배아 및 유전자 등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생명윤리 정책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유전자 검사 기관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과 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다.

162.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5년간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지식재산의 관리 및 보호,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신산업 창출 촉진, 과학기술분야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한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163.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상호보완하며, 정부는 특히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 기초연구, 고위험연구, 미래성장분야, 공공수요 대응분야, 중소기업관련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정부는 연구개발지원에만 총 17조 6,395억원을 투자하였다. 정부가 투자하는 전략기술에는 난치병극복,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식품안전 등 식량권 확보, 기후변화대응 및 생활공간 편의성 향상 등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해서는 3차보고서 제466항-472항을 참조바라며, ESCAP지원 금액은 연간 450만 달러로 증대되었다. 과학기술 ODA 확대, 국제과학기술허브 구축, 전략분야 국제공동연구활성화 등 국제적 과학기술교류에 관한 과제를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
164. 한국은 기후변화나 에너지 등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 해양 등 분야에서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학ODA의 일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발전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